
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(안)

2021. 4.

서울물재생시설공단

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(안)

□ 관련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【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 제5조 제2항 제5조(정관)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,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(이하“시의회”라 한다)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「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」 제42조

【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】 제42조(정관의 변경)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개정 사유

- 공단 신축설비 「서남·탄천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」 증설에 따른 필요인력 정원 반영

□ 주요 내용

- 서남·탄천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정원 증원 29명
 - ▶ 서남센터(일반직 18명), 탄천센터(일반직 11명)

총 정원 증원 (현행) 343명 ⇒ (개정) 372명 (증 29명)

※ 현재 정원과부족 인원(13명)은 별도로 채용 중(정원 343명 / 현원 330명)

※ 퇴직자 및 연구소 인력 등

- 총인시설 증원예비비 기 확보 : 1,042백만원
- 규정 및 정원표 내용상 용어 변경
 - ▶ 제6조제1항 : ‘노동자 이사’ → ‘노동이사’
 - ▶ <별표2> 정원표 : ‘공무직’ → ‘시설관리직’
- 제26조제15호 삭제(제1회 이사회 의결사항)
 - ▶ 15. 이사장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

□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 (21. 4. 15.)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※ 별첨 : 정관 개정 세부내용

정관 개정 세부내용

1. 개정사유

가. 방류수질 기준 안정적 준수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신설

○ 총인처리시설 현황

구 분	서남센터			탄천센터		
시설용량	737,000m ³ /일			450,000m ³ /일		
처리공법	고속응집침전			가압부상		
공사기간	'17.9.1.~'21.4.30.			'17.10.1 ~ '21.5.30.		
시운전 기간	'20.10.5.~'21.4.			'20.11.16.~'21.7.		
시운전기간 운영인력	시운전팀(10명) + 서남직원(8명)			시운전팀(6명) + 탄천직원(4명)		
성능보증수질	BOD	SS	T-P	BOD	SS	T-P
	6.0이하	6.0이하	0.2이하	3.2이하	3.5이하	0.14이하

※ 서남센터 총인인력 채용(~6.17.) 전까지 : 시운전팀 보존인력(5명)+서남직원(8명) 비상 운영

나. 총인처리시설 운영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 필요

○ 시운전 종료 전 인력 채용으로 안정적 시설 인수·운영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필요인력 산정

구분	(1안) 환경부 기준		(2안) 유사사례 기준		적정인력 적용		비고
	서남센터	탄천센터	서남센터	탄천센터	서남센터	탄천센터	
소 계	18명	11명	20명	12명	18명	11명	최종 (1안) 적용
합 계	29명		32명		29명		

※ 산출근거 : 환경부 지침 및 운영시설(중량)사례 비교하여 최소 인원 산정

**나. 서남·탄천센터(수처리팀) 정원 증원 ... 일반직 3급이하 29명
(총인처리시설 운영인원)**

구	분	서남센터	탄천센터	비고
합	계	29명		
소	계	18명	11명	
상	근	6명	3명	
교	대	3명 × 4조 = 12명	2명 × 4조 = 8명	
근 무 직 (4 조 2 교 대)				

※ 교대근무직(4조2교대) 시행 : 근로기준법 제50조, 53조에 의거(52시간)

① 신규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적정인력 확보 : 일반직 +29명

○ 총인처리시설 업무 총괄 : 상근직 +9명

- ➡ 주간(09시~18시) 총인처리시설 공정운영 및 시설보수 업무수행
- ➡ 서남센터 : 6명, 탄천센터: 3명 신규채용 예정

○ 시설 무중단 운영을 위한 교대근무자 배치 : 교대근무직 +20명

- ➡ 야간시간 (18시~익일 09시) 수질사고 예방차원의 시설점검 및 순찰 업무수행
- ➡ 서남센터 12명, 탄천센터:8명 신규채용 예정

총 정원 증원 (현행) 343명 ⇒ (개정) 372명 (3급이하 +29명)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공단 정원관리 절차 알림 (市 물재생시설과-1773호, '21.02.08.)

**나. 절 차 : 이사회 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
인가 후 공포·시행**

4. 개정사항

가. 정관 일부개정규정안 (「붙임1」 참조)

(붙임1)

현 행

개정(안)

< 별표 2 >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343명】

임원 및 임직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	공무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
정 원	343	4	318	2	4	312	21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

< 별표 2 >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372명】

임원 및 임직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
			소계	
정 원	372	4	347	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

현 행	개정(안)
<p>제6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1인의 이사장, 2인 이내의 상임이사, 7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시의 물재생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되고,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이사로 둔다</p>	<p>제6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1인의 이사장, 2인 이내의 상임이사, 7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시의 물재생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되고,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로 둔다</p>
<p>제26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~14. “생략”</p> <p>15. 이사장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</p> <p>16.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</p> <p>17.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26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~14. “생략”</p> <p>15. “삭제”</p> <p>15.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</p> <p>16.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</p>